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0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백혜련 · 전진숙
김문수 · 서영석 · 전종덕
서미화 · 송옥주 · 임미애
이건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,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,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55조)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 중 “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”를 “주기적으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”를 “주기적으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, “교육시간”을 “주기, 교육시간”으로 한다.

③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.

제58조제2호 중 “아니한 경우”를 “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독업무

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 5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55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)	제55조(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)
① 소독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<u>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u>	① ----- ----- ----- <u>주기적으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u>
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<u>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</u>	② ----- ----- <u>주기적으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<u>교육시간</u> ,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 ----- <u>주기</u> , <u>교육시간</u> ----- ----- -----.
제58조(시정명령)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	제58조(시정명령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(생략) 2.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<u>아니한 경우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<u>아니하</u> <u>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</u> <u>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</u> <u>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한 경</u> <u>우</u>
---	---